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 9. 8 선고 2020가단18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문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박희진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기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시성

변 론 종 결 2021. 8. 18.

판 결 선 고 2021. 9. 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은 원고에게 2006. 5. 17. 통영시 D 임야 4,7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등기계 접수 제11023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14,2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통영시 E 임야 6,500㎡(이하 기재하는 토지는 모두 통영시 F동에 있으므로 지번지목면적으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1918. 3. 30. 피고들의 증조부 G 앞으로 사정이 이루어졌다.

나. 1958. 12. 20. E 임야 6,500㎡는 D 임야 6,446㎡, H 임야 54㎡로 분할되었고, 1990. 12. 27. D 임야 6,446㎡는 D 임야 5,406㎡, I 임야 701㎡, J 임야 339㎡로 분할되었다.

다. 1998. 6. 26. D 임야 5,406㎡, J 임야 339㎡에 관하여 피고들의 부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2006. 5. 17.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2009. 2. 5. D 임야 5,406㎡는 이 사건 토지인 D 임야 4,762㎡와 L 임야 43㎡, M 임야 601㎡로 분할되었다.

마. 통영시가 2009. 3. 17. J 임야 339㎡, L 임야 43㎡, M 임야 601㎡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 B은 총 14,253,500원을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

바. 1939. 8. 29. G이 사망하여 처인 N이 호주상속하였고, 1958. 7. 18. N이 사망하여 손자 K이 호주상속하였다. 2007. 12. 18. K이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O, 자녀인 피고들이 있었는데, O가 2008. 1. 5. 사망하여 피고들이 O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18. 3. 30.경 문중의 선대 분묘 7기를 설치하고 시제를 지내오던 이 사건 토지의 모(母) 토지 E 임야 6,500㎡를 피고들의 증조부 G 명의로 국가로부터 사정받았다. 그런데 G의 장손이자 피고들의 부친인 K이 원고 모르게 1998. 6. 26. 본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6. 5. 17. 피고 B에게 증여하였다. K이 G의 재산 전부를 상속받았고 K이 2007. 12. 18. 사망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 B은 자신의 부 K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는바, 이는 반사회질서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5. 17. 증여를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J 임야 339㎡, L 임야 43㎡, M 임야 601㎡는 원고가 G에게 명의신탁한 E 임야 6,500㎡에서 분할된 토지들로서, 피고 B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통영시로부터 받은 보상금 14,253,5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종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종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종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조상의 분묘 7기를 설치하고 시제를 지내온 사실, 위 분묘 관리 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관리하여 온 사실, 1960년경 P 성림보호자를 Q으로 지정한 사실, 원고가 1995. 10. 18. 분묘 주위 임야 일부를 R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Q” 내지 “S”은 피고들의 부 “K”과 그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점, 1995. 10. 18.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의 목적물이 “묘지부근 임야일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지번이나 위치가 특정되어 있지 않는 점, 피고들 측이 오랜 기간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분할 전 E 임야 6,500㎡에서 분할된 J 임야 339㎡, L 임야 43㎡, M 임야 601㎡도 원고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토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설령 원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그러한 약정이 있었음을 알면서도 자신의 부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도록 적극 요청하거나 유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증여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가 G에게 E 임야 6,500㎡를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